



UNIST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관련: 교과부 대학선진화과-6470(2011.8.2)
2. 위 관련에 의거 학칙보고제 폐지, 전임강사 명칭 폐지, 교원 임무 다양화,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 마련, 학·석사학위 통합과정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설명자료 1부. 끝.

교무처장

수신자 전부서

교무팀원	박정대	교무팀장	전결 08/08
			노승훈

협조자

시행 교무팀-3701 (2011.08.08.) 접수 연구지원팀-2299 (2011.08.08.)
 우 689-798 689-79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반 /
 연리 100번지)
 전화 052-217-1108 전송 052-217-1109 / corres@unist.ac.kr / 공개